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리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7조제1항제1호의 라목신설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 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2. ~ 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<u>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</u>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80%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수입 감소 예상

※ “의사상자”란 의사자 및 의상자의 합성어

- 의사자(義死者)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, 의사자유족은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
- 의상자(義傷者)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, 의상자가족은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≒ 20,415천원(연평균 4,083천원)

- 예상되는 수입감소액은 5년동안 20,415천원으로 연평균 4,083천원
- 추계의 전제
 - 비용추계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4년
 - 추계기간 동안 의사상자 수, 이용건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(2018년말 기준 서울시 의사상자는 146명, 국가유공자(상이자)는 26,398명)
 - 이용자는 의상자의 경우, 본인 및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을 포함 5명 가정
 - 의사자유족은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을 포함 4명 가정

○ 추계의 방법

- 의사상자의 주차요금 감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 공영주차장 이용건수 중 국가유공자(상이자) 이용건수, 이용횟수를 활용함

※ 2018년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(상이자) 주차요금 1,896,863천원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 ≙ 20,415천원(연평균 4,083천원)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액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2020	2021	2022	2023	2024	계
		조례안 제7조 제1항	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액						
세입				-4,083	-4,083	-4,083	-4,083	-4,083	-20,415
		소계(a)		-4,083	-4,083	-4,083	-4,083	-4,083	-20,415
세출		-		-	-	-	-	-	-
	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		-4,083	-4,083	-4,083	-4,083	-4,083	-20,415

○ 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액 ≙ 20,415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액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의사상자 주차요금 감면액 = 이용 건수* × 건당 요금* × 80%감면율

$$= 580\text{건} \times 8,800\text{원} \times 80\%$$

$$= 4,083\text{천원}$$

- 이용 건수 = 의사상자 수 × 연평균 이용횟수*

$$= \{(85\text{명} \times 4) + (61\text{명} \times 5)\} \times 0.9\text{회} = 580\text{건}$$

※ 의사자유족은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각 1인 가정(85명×4)

※ 의상자 및 가족은 본인 및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각 1인(61명×5)

※ (의사상자의 1인당) 연평균 이용횟수

= '18년 국가유공자(상이자) 시간주차요금감면 건수 ÷ 국가유공자(상이자) 수

= (13,264건+10,569건) ÷ 26,398명 = 0.9회

· 건당 요금

= '18년 국가유공자 시간주차요금 ÷ 국가유공자 시간주차 건수

=(129,962,100원+79,841,360원) ÷ (13,264건+10,569건)

= 8,800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박종철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c99@seoul.go.kr